

□ 변경 대비표

변경시행일 : 2019년 5월 17일

신한BNPP커버드콜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집합투자계약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2 오기정정

| 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 1.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집합투자"라 함은 2인 이상의 투자자<신설>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집합투자"라 함은 2인 이상의 투자자(또는 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
| 1.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15조 (자산운용지시 등) | 제15조 (자산운용지시 등)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제15조 (자산운용지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현행과 같음> |
| 1.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오기정정: 제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 제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생략>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신설>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생략> ④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한BNPP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현재 기준)으로 전환(모자형 전환 등)하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 신한BNPP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현재 기준)으로 전환(합병,모자형 전환 등)한다. | 제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한BNPP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설정일 기준)으로 전환(모자형 전환 등)하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 신한BNPP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설정일 기준)으로 전환(합병,모자형 전환 등)한다. |
| 1.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49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49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이하 생략> | 제49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제2항에서 정하는 때 <이하 현행과 같음> |
| 1.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 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①~⑥ <생략>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이하 생략> | 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펀드위험등급 및 기준 변경(2등급→4등급, 투자자산→변동성)
- 2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 3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 4 오기정정
- 5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 1. 펀드위험등급 및 기준 변경(2등급→4등급, 투자자산→변동성) : 표지 | <p>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p> | <p>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p> |
| 1. 펀드위험등급 및 기준 변경(2등급→4등급, 투자자산→변동성) :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p>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된 이후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해당 펀드를 각 위험 별로 평가한 후 총괄하여 원본손실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1등급, 높은 경우 2등급, 다소 높은 경우 3등급, 보통인 경우 4등급, 낮은 경우 5등급, 매우 낮은 경우 6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6개의 위험등급 중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설정된 이후 3년 경과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게 되며 등급분류기준이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험등급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과거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의 변동은 상품에 내재되어있는 거래상대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 위험요인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p> | <p>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8.06%이며 4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투자신탁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등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하여 이를 상회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고, 표준편차 값이 하위 등급의 상한치보다 낮은 경우 등급을 하향하게 됩니다. 단, 실제 과거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의 변동은 상품에 내재되어있는 거래상대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 위험요인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p> |
| 2.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19년 4월 30일) |
| 3.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2019년 4월 30일) |
| 4. 오기정정: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p>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이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 신한BNPP 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 제1 호[채권]"(현재 기준)으로 전환(모자형 전환등) 하며,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 인 경우에는 임의해지 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 신한BNPP 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제1 호[채권]"(현재 기준)으로 전환(합병,모자형 전환 등) 될 예정입니다.</p> | <p>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이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 신한BNPP 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 제1 호[채권]"(설정일 기준)으로 전환(모자형 전환등) 하며,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 인 경우에는 임의해지 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 신한BNPP 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제1 호[채권]"(설정일 기준)으로 전환(합병,모자형 전환 등) 될 예정입니다.</p> |
| 5.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p>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신설 >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p> | <p>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p> |

| | | |
|---|--|---|
| <p>5.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p> |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이하 생략></p> |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이하 현행과 같음></p> |
|---|--|---|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펀드위험등급 및 기준 변경(2등급→4등급, 투자자산→변동성)
- 2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 3 오기정정

| 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 <p>1. 펀드위험등급 및 기준 변경(2등급→4등급, 투자자산→변동성): 표지</p> | <p>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p> | <p>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p> |
| <p>1. 펀드위험등급 및 기준 변경(2등급→4등급, 투자자산→변동성): 제2부 II. 3.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p> | <p>제2부 II. 3.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6개의 위험등급 중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p> | <p>제2부 II. 3.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8.06%이며 4등급으로 분류됩니다.</p> |
| <p>2.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제2부 I. 3. 운용전문인력</p> | <p>제2부 I. 3. 운용전문인력</p> | <p>제2부 I. 3. 운용전문인력 -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19년 4월 30일)</p> |
| <p>3. 오기정정: 제1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p> | <p>제1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한BNPP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현재 기준)으로 전환(모자형 전환 등)하며,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임의해지 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신한BNPP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현재 기준)으로 전환(합병, 모자형 전환 등)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 <p>제1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한BNPP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설정일 기준)으로 전환(모자형 전환 등)하며,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임의해지 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신한BNPP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설정일 기준)으로 전환(합병, 모자형 전환 등)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